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자관보 제20651호(2023.12.21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`23.12.21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 임 : 전자관보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256호 (2023.12.27) 접수 ( )
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http://www.tourbus.or.kr
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